

## 주요국 지역화폐 발행 형태의 변화

- 주요국의 지역화폐는 기존에 공동체부조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 이후 최근까지 발행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발행 형태도 주로 전환화폐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
- 주요국별 전환화폐의 경우 대체로 비영리단체의 주도로 발행되고, 일부 지역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통화로 환전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이용 시 이점이 부족한 상황
- 한편, 국내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지역내 공동체 상호부조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역화폐의 발행이 확대

□ 지역화폐는 19세기에 영국에서 처음 도입<sup>1)</sup>된 이후 20세기 초반에 정부의 금지조치로 중단<sup>2)</sup>되었으며, 1983년 캐나다 지역의 공동체부조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 이후 최근까지 발행 지역이 확대되고, 발행 형태도 점차 변화하고 있는 상황

-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특정 지역 및 집단에서 통용되는 법정통화(legal tender) 이외의 보완적 성격의 지불수단을 의미하며, 법정통화와의 환전가능 여부에 따라 공동체화폐 및 전환화폐로 분류<sup>3)4)</sup>
  - 공동체화폐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상호 교환을 바탕으로 해당 가치를 적립하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거래형태에 따라 대차거래방식인 LETS, 소요시간에 대한 가치를 적립하는 타임뱅크 형태 등으로 구분
  - 전환화폐는 지역화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바우처 형태의 지역화폐를 직접 구매 및 법정통화로의 환전 기능을 포함한 것이 특징

1) 최초의 지역화폐는 영국의 사상가 Robert Owen이 만든 노동증서(경기연구원, 2018,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이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형태로 변화

2) 독일(Wara: 1930~1931년 2월 운영), 미국(Stamp Scrip: 1930~1933년 3월 운영), 오스트리아(Labor Cerifications: 1932~1933년 11월 운영) 등에서 지역화폐를 운영한바 있으나, 각 정부에서 법정통화의 유통 제약 및 통화질서 교란 등의 이유로 금지 조치(한국은행, 2019)

3) 한국은행, 2019, 국내의 지역화폐 도입사례 및 시사점, 한국은행 강원본부.

4) 지역화폐의 분류는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갖고 있어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한국은행, 2019)

지역화폐 주요 내용

구분	공동체화폐			전환화폐
	발행 형태	LETS	타임뱅크	
거래 방식	개인간(1대1) 재화 및 서비스의 상호 교환을 바탕으로 해당 가치를 대차거래방식으로 기입	개인간(1대1) 서비스 교환시 시간을 가치화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 공식 time broker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회원간의 시간 가치를 계좌에 기입하고 사용하는 방식	재화 및 서비스의 상호 교환시 실물 화폐를 이용가능하며, 개인간 거래 및 가맹점 거래 시에도 이용가능	운영기관에서 발행하고, 바우처 형태의 지역화폐를 직접 구매 및 법정통화로의 환전 기능을 포함, 가맹점 거래 시 이용가능

자료: Kristofer Dittmer(2013) 및 한국은행(2019) 주요 내용 정리

— 과거 상호부조형태의 공동체화폐 발행에서 최근에는 법정통화 교환 기능이 포함된 전환화폐가 주로 발행

- 미국의 경우 1986년 타임뱅크 형태의 타임달러(Time Dollar) 및 1991년 아워즈 형태의 이 타카(Itaca Hour)등 공동체화폐 형태의 지역화폐가 대표적이었으나, 2006년 메사추세츠주 버크셔지역에서 전환화폐 형태의 버크쉐어(Berk Shares)가 도입
- 영국내에서는 1985년 노리치지역의 레츠(Norwich LETS)가 처음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약 50여개<sup>5)</sup>의 LETS 형태로 공동체화폐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후반부터 전환화폐 발행지역도 확대되어 브리스톨, 리버풀 등 영국내 12개 지역에서 전환화폐 형태의 지역화폐가 운영 중
- 프랑스의 경우 1994년 Ariège지역에 LETS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전환화폐의 경우 2010년 빌너브 쉬르 룩(Villeneuve-sur-Lot)의 라베이로(Abeille) 발행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운영 중인 전환화폐는 50여개 이상<sup>6)</sup>

□ 주요국별 전환화폐의 경우 대체로 비영리단체의 주도로 발행되고, 법정통화로 환전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특징

- 캐나다는 1996년 앨버타 주의 자선단체인 Arusha Centre가 주관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켈거 리달러를 도입
  - 거래 시 기존에는 실물화폐 위주의 거래에서 2018년 블록체인기술을 도입으로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
- 일본의 경우 비영리협회(NGO등)의 관련 프로젝트 참여자에 한하여 가맹점에서 실물화폐 혹은 모바일 계좌로 전환화폐를 지급하며, 이는 해당 협회 및 사무국에서 법정통화로의 전환 혹은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5) 영국의 각 지역별로 London(7개), Midlands(6개), North England(4개), South England(23개), Scotland(3개), 기타 지역(8개) 등으로 LETS를 운영중(<https://www.letsf.org.uk/>)

6) <http://monnaie-locale-complementaire-citoyenne.net/france/>

- 어스데이머니(Earth Day Money)와 아톰(ATOM)은 각각의 어스데이머니협회(Earth Day Money Association) 및 아톰실행위원회 사무국에서 환경보전, 자원봉사 등의 프로젝트를 개최하고, 이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 한하여 전환화폐를 지급
- 전환비율은 아톰의 경우 1:1로 가능<sup>7)</sup>하고, 어스데이머니의 경우 협회에서 기본 전환비율을 1:1로 정하고 있으나, 이용 시 결제 금액별로 이용비율을 개인이 임의적으로 적용하여 법정 통화와 혼합하여 사용 가능<sup>8)</sup>
- 운영지역의 경우 아톰은 와세다 및 타카다노바바 등에서, 어스데이머니는 도쿄 등에서 운영
- 영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거래방식으로 차별화되어 발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짐
  - 거래방식은 지역별로 종이화폐 이외에 온라인 및 모바일앱, 메시지(text) 거래 등 지역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 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화폐는 사업자에 한하여 영국의 법정통화인 스텔링과 1:1 비율로 교환가능
  - 브리스톨 지역의 경우 지역화폐의 활성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에너지 요금을 지역화폐로 납부가능하게 하고, 브리스톨파운드 전용계좌를 운영하는 브리스톨신협(Bristol Credit-Union) 예금은 예금보험기구(FSCS)가 보호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짐
  - 루이스파운드는 지역화폐 발행금액의 일정부분을 지역발전기금에 예치하여 지역프로젝트 운영에 사용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구성
- 또한 유로지역의 경우 유럽연합(EU)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Community Currencies in Action(CCIA)을 설립하고, 각 국별 특정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화폐를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
  - 유럽연합은 해당 지역화폐 시범운영을 위해 유로지역발전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에서 313만유로를 배정<sup>9)</sup>
  - 해당시범사업 운영지역은 프랑스(SoNanantes), 영국(Brixton, Spice Time Credits), 벨기에(e-Portmonnee), 네덜란드(TradeQoin, Makkie) 등 6개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하여 운영 중이며, 이중 전환화폐는 프랑스의 소낭트 및 영국의 브릭스톤파운드가 대표적임

7) <http://atom-community.jp/>

8) <http://earthdaymoney.heteml.jp/earthdaymoney.org/about/use.php>

9) European Commission, 2016.01.29, Community currencies get into action for local development.

국별 주요 지역화폐 현황

국가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지역 화폐	소낭트 (Sonantes)	브리스톨	브릭스톤	버크쉐어 (Berk Shares)	아톰 (Atom)	어스데이머니 (Earth Day Money)	캘거리달러
도입 지역	낭트	브리스톨	램버스	메사추세츠주 버크셔	와세다, 타카다노바바	도쿄, Minamishinshu (2019년 5월 현재)	앨버타주
도입 시기	2015년	2012년	2009년	2006년	2004년	2002년	1996년
발행 및 관리 기관	시립낭트은행 (Credit Municipal de Nantes)에서 거래 관리	브리스톨 신탁 및 브리스톨 파운드 사무국 (community Interest Company)	Brixton Pound CIC.	버크쉐어 (Berk Shares)	Atom Currency Executive Committee	어스데이머니 협회 (Earth Day Money Association)	캘거리 Arusha Centre
거래 방식	소낭트 카드, 온라인 및 모바일앱	실물화폐, 온라인 및 모바일앱, 메시지 (text)	종이화폐, 온라인 거래	실물화폐	실물화폐	실물화폐, 모바일	실물화폐, 온라인
전환 비율	1대1	1대1	1대1	1대0.95	1대1	1대1	1대1

주 : 전환비율은 지역화폐대비 법정통화 전환비율을 의미  
 자료: 각 해당 홈페이지 및 Community Currency Knowledge Gateway.

□ 주요국들의 전환화폐 발행이 확대되고 있으나, 운영 특성상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에서 이용 시 이점이 부족한 상황

- 지역화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전환화폐 기능은 일부 지역의 경우 법정통화로 환전시 기존의 전환비율이 유지되지 않고, 유통기한이 있어 보유 이점이 경감되는 상황
  - 미국 버크쉐어의 경우 기업이 법정통화로 환전할 경우 1버크쉐어: 0.95달러의 비율로 환전되고, 영국의 브릭스톤파운드의 경우에도 기업이 환전 시 일정수수료(10%)가 부과
  - 영국 루이스파운드의 경우 유통기한이 존재하며, 유통기한 내에 이용하지 못할 경우 법정통화 및 지역화폐 신권으로 교환해야 함
-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금융기관간 거래 시차가 발생하고, 거래수수료를 이용자에 부담
  - 브리스톨 지역의 경우 일발은행과 브리스톨파운드 계좌간의 자금 이체시 브리스톨신탁에서 평일 오전·오후 하루 2회에 한하여 자금이체가 가능하고, 오후의 지정된 시간 이후 입금할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브리스톨파운드 계좌에 입금되지 않아 자금이체의 시차가 발생

- 영국의 경우 브리스톨파운드를 운영하는 비영리기구인 Bristol Pound Community Interest Company의 운영을 위해 브리스톨파운드 거래시 거래수수료 부과(텍스트 및 앱 거래는 2%, 온라인 거래는 1%)

□ 한편, 국내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지역내 공동체 상호부조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

- 기존의 국내 지역화폐는 대전의 한밭레츠, 과천 품앗이, 송파 품앗이 등 공동체 상호부조 형태로 주로 운영됨
  - 한밭레츠의 경우 회원간 서비스 및 재화 거래 후 해당 가치에 상응하는 지역화폐 금액이 대차 거래 방식으로 회원계좌에 기입되고, 이는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 및 관리
- 최근, 지역내 경제활성화 목적으로 전환화폐의 특징을 지닌 지역상품권<sup>10)</sup> 및 지역화폐의 발행이 확대
  -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해당구내에서 자원봉사, 기부액, 품앗이 등을 이행시 해당가치를 회원 계좌에 적립, 결제 시 원화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제금액의 10%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며, 노원구에서 이를 관리(2016년)
  - 강원도의 경우 충북 괴산군의 출산장려금 및 전입장려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sup>11)</sup>한바 있으며, 강원도에 한해 이용 가능한 강원상품권을 도입(2017년)
  - 각 지자체별로 발행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우 현재 61개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2018년 7월기준), 각 지자체에서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발행하는 형태로 운영<sup>12)</sup>
  - 또한 가장 최근 도입된 경기 지역화폐의 경우 경기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발행 및 일반발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발행은 청년기본소득 및 공공산후조리비용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형태이며, 일반발행은 일반인이 직접 지류, 카드 및 모바일로 구매·충전하는 형태로 운영
  - 최근 발행된 국내 지역화폐는 대상인구 수와 정책발행이라는 특징에서 과거사례와 구별되는 면이 있음

10) 지역상품권은 지역화폐로 명시되지는 않으나 특정 지역 및 집단에서 통용되는 법정통화(legal tender) 이외의 보완적 성격의 지불수단으로 지역화폐와 유사한 특성을 지님

11) 행정자치부, 2016. 12. 10, 민관이 함께 지역금융의 새 방향을 논하다, 보도자료.

12) 이용활성화를 위해 구매자가 상품권 구매 시 구매금액의 1%적립, 5,000원 이상 적립시 상품권으로 교환 및 할인판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해당 상품권으로 각 지자체가 정한 일정 비율을 지급(행정자치부, 2017,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안내서)

국내 주요 지역상품권 및 지역화폐 현황

도입지역	서울시 노원	전국 61개 <sup>1)</sup> 지자체	강원도	경기도
도입시기	2016년	지역별로 상이 <sup>3)</sup>	2017년	2019년
화폐·상품권명	노원(NW)	고향사랑상품권	강원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시·군별로 화폐명상이)
도입목적	지역내 경제 활성화 및 자금 역외유출 방지 등			
발행방식	자 원 봉 사 ( 1 시 간 =700NW), 기부액(10%), 품앗이(1시간=700NW), 물품거래(실거래가) 등으로 적립	각지자체가 상품권형태로 발행	강원도지사가 발행자로 상품권형태로 발행	경기도내 31개 시장 및 군수가 발행권자로 일반 발행 및 정책발행
특징	- 노원구청에서 운영, 노원구내에서만 이용가능 -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10%를 노원으로 결제가능 - 최대적립액은 50,000NW, 유효기간 3년	- 해당지자체 행정구역에 한해 이용 - 구매자에 한해 구매 인센티브 적용,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수단	-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지급수단	- 개인이 개별적으로 구매가능한 일반 발행 및 정책자금 지원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책발행으로 구분 - 시·군별로 발행형태 및 규모가 상이함
법정통화 전환여부 <sup>2)</sup>	불가	개인은 액면금액의 60% 이상 이용시 현금 전환가능	개인은 액면금액의 60% 이상 이용시 현금 전환가능	시·군별 상이하나 대체로 이용금액의 70% 이상 이용시 차액 전환가능 <sup>1)</sup>

주 : 1) 2018년 7월 기준(행정안전부, 2018. 7. 10, 행안부-조폐공사 손잡고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 보도자료)

2) 개인구매자 기준

3) 각 지자체에서 발행·사용 중이나 조례법안 발의 중

자료: 각 해당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2017, 2018)

연구원 이정은